

CONTACT



변호사 김성민

T: 02.772.4979
E: sungmin.kim@leeko.com



변호사 윤민희

T: 02.6386.0892
E: minhyuck.yoon@leeko.com



변호사 문정현

T: 02.6386.1916
E: junghyun.moon@leeko.com

자기주식 제도 규제 시행 및 분기배당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6. 5자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렸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규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규정)이 2024. 12.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분기배당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 관련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나머지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개정시행령 및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

개정시행령 및 개정규정이 2024. 12.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i)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ii)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iii) 신탁 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 처분시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과의 규제차익이 해소되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된 뉴스레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규제 강화" 참조).

2. 선(先) 배당액 확정·후(後) 배당기준일 방식의 주권상장법인 분기배당 제도 도입

법무부가 2023. 1.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의결권 기준일 현재의 주주가 권리 행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가 권리 행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은 결산 배당 시 배당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에 관한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및 9월 말일로 명시 하면서 이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선 배당 기준일·후 배당액 확정).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게 되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이후 결정되는 배당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및 9월 말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은 3월, 6월 및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그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법 제165조의12 제1항 내지 제3항).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확정 · 후 배당기준일' 구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상장법인의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정관에 개정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공시 제도 개선 및 과징금 제재 강화

개정법에 따르면, 기업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개선하고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 강화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간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직전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도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160조 제2항).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발행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발행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 공시 위반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의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조정되고,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소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가 강화됩니다(개정법 제429조 제3항 및 제4항).

이번 개정은 기업공시 제도 개선 및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전환사채 발행중단 청구 등을 가능하게 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투자자 및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의 전(全) 과정 및 합병·분할·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자기주식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공시 실무를 포함한 개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상장법인들은 이번 개정법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관 개정 등 작업을 늦지 않게 마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올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